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1 - 2 (3호)
안전유형	심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2021. 1. 27.



관계부처 합동

요 약

□ 검토 배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동일 세대 내 본인(피해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하고 있음
 - 가정폭력 증거서류의 제한적 인정, 피해자 자녀·부모의 열람(교부) 제한 신청대상 미포함에 따른 주소지 노출 우려 등 문제점 개선 필요
- ※ 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 개선」 권고('20.10월)

□ 제도 개선 사항

○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서류 추가

현 행	개 선
◦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의 상담·입소 기록은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불인정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추가

○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부모를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선
◦ 가정폭력피해자는 본인과 다른 세대에 속한 자녀·부모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불가	◦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다른 세대에 속한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가능

○ 열람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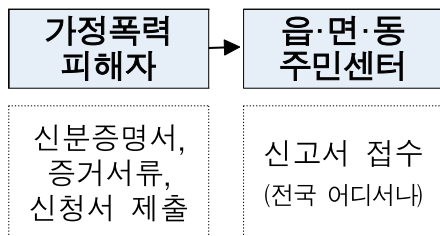
현 행	개 선
◦ 열람제한 대상자인 동시에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초본 열람(교부) 가능	◦ 열람제한 대상자인 동시에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초본 열람(교부) 제한* * 개인 간 채권·채무 이해관계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열람(교부)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시행령 개정 예정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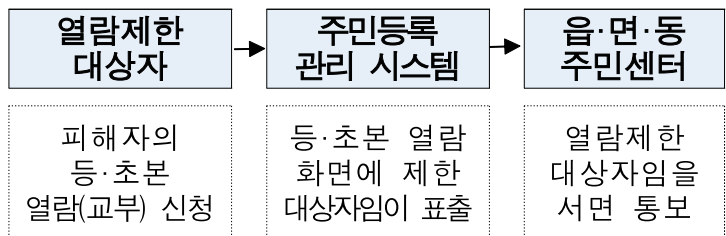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일정 범위의 가족*은 위임 없이도 신청 가능(주민등록법 제29조)
 - * 세대주의 ①직계혈족의 배우자·②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①배우자·②직계혈족 등
 - 다만, 가정폭력피해자는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능
 - 제도 운영과정에서 가정폭력 증거서류의 제한적 인정,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대상 한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 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 개선」 권고('20.10월)

<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 >

▶ < 열람·교부 제한 신청 >



< 열람·교부 제한 확인 >



▶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 운영

-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증거능력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의 소명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시행규칙 제13조의2)

추가 제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어 증명력 보완 필요 - 가정폭력 상담소, 긴급전화센터(상담),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추가 제출 不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서 현장조사 등 실시, 객관적 피해사실 확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긴급피난처), 일시지원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II.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①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의 발급서류에 대해 증거서류로 불인정

- (문제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증거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나,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의 발급서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불가

◆ (사례) 학대를 가하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거주하는 아동은 '쉼터 입소확인서'만으로는 부모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확보할 때까지 주소지 노출 등 신변보호에 한계

⇒ (개선방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설의 상담사실확인서·입소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추가

② 피해자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녀·부모의 열람제한 신청대상 미포함

- (문제점) 피해자와 자녀·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 후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으로 열람 가능(법 §29②제5호)

◆ (사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배우자 B가 직장 문제로 친정부모님께 자녀를 맡겨두었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또는 사위)임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처가 부모님을 찾아와 협박하여 B의 거주지까지 알아냄

⇒ (개선방향)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세대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에 포함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열람 제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년 자녀 및 부모는 본인 동의 필요

* 열람제한 대상자인 부모(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법원의 친권·양육권 변경 결정, 가정폭력 관련 형사재판,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 주장 가능

③ 열람제한 대상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열람 가능

- (문제점)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교부)*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초본 열람 가능(법 §29②제6호)

◆ (사례) 가정폭력피해자인 아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채권이 있다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동 주민센터에서 며느리의 주민등록 열람 허용

⇒ (개선방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 간 이해관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열람(교부)의 전면적 제한 추진

* 개인간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현황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3건 발의('21.1월 기준)
 - 발의 의원 : 김상훈 의원('20.11.23.), 박대출 의원('20.12.18), 이영 의원('20.12.23.)
 - 주요 내용(법 제29조 개정)
 -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대상 확대(세대를 달리하는 자녀·부모 포함)
 - 열람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제한

III. 향후 추진계획

- 의원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안 관련 국회 대응(계속)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 중, 동시 개정)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 등은 실제 주민등록법령 개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서류 추가(규칙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신설></p> <p><신설></p> <p>9. ~ 12. (생략)</p>	<p>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p> <p>10.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p> <p>11. ~ 14.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p>

□ 가정폭력피해자 자녀·부모를 열람제한 신청대상에 포함(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⑤ (생략)</p> <p>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p> <p>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u>가정폭력 피해자</u>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 ----- ----- ----- ----- ----- ----- ----- ----- ----- ----- ----- -----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u>가정폭력피해자등</u>”이라 한다) ----- -----.</p> <p>⑦ ----- ----- -----<u>가정폭력 피해자등</u>----- ----- ----- ----- ----- -----.</p>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서식 역시 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부모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음

□ 열람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영 개정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 제4항 관련) 1. ~ 3. (생략)</p> <p>4. <u>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u></p>	<p>[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 제4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p> <p>4. <u>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한다.</u></p>